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668

발의연월일: 2025. 1. 21.

발 의 자:최보윤·김선교·서일준

조경태 • 유용원 • 박상웅

성일종 · 신동욱 · 이헌승

이달희 · 최수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장애인인 선거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각종 규정을 두고 있음. 즉,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을 위한 거소투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 한국수어 및 자막의 방영,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운용,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 제작·사용, 투표소에서의가족 등의 투표 보조 등을 들 수 있음.

그런데 이러한 장애인 선거 편의 규정은 장애인에게 정치적 권리를 포함하여 공적 생활에 등등하게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o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제29조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제29조에 따라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고 공적 생활에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현행법 관련 규 정을 정비하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구·시·군선거방송토론회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대상군인 학계·법조계·시민단체·전문언론인에 장애인단체를 추가함(안 제8조의7제2항제2호).
- 나.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는 발달장애인인 선거인을 위하여 별도의 예비후보자공약집·선거공보 및 선거공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안 제66조의2 신설).
- 다. 방송광고,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 방송시설주관 후보자연설의 방송, 한국방송공사의 경력방송, 방송시설주관 경력방송,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언론기관의후보자등 초청 대담·토론회, 방송시설을 이용한 정강·정책의 방송연설에서는 한국수어 또는 자막 방영을 의무화함(안 제70조제6항및 제72조제2항, 안 제79조제12항 신설, 안 제81조제8항 등).
- 라. 투표소는 고령자·장애인 및 임산부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승강 기 및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이 있고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하도록 함(안 제147조제2항).
- 마. 기관·시설 안의 기표소에 후보자 등이 선정한 참관인이 없는 경우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 직원 중에서 1명을 지정하거나, 그 기표소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명을 선정하여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도록함(안 제149조제6항 단서 신설).

- 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인 선거인을 위하여 중앙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용지의 내용을 이해 하기 쉽게 나타낸 그림투표용지를 제작·사용하거나 투표용지에 후 보자의 소속정당을 나타내는 마크나 심벌표시 등을 기재하여 사용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1조제9항 신설).
- 사. 정신적 장애 또는 고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이 가족, 본인이 지명한 2인 또는 공적 보조원을 동반하여 기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7조제6항).
- 아. 재외투표관리관의 사무에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등의 재외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 치, 적절한 재외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를 명시함(안 제218조의 3제2항제3호).

법률 제 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7제2항제2호 중 "학계·법조계·시민단체·전문언론인"을 "학계·법조계·시민단체·장애인단체·전문언론인"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41조제1항 중 "口述 또는 書面으로"를 "구술(口述) 또는 서면을 포함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법으로"로 한다.

제65조제4항 본문 중 "작성할 수 있다"를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작성할 수 있다"로 한다.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발달장애인을 위한 선거정보 제공) ①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기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제60조의4에 따라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여 판매·제출하는 때에는 발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선거인을 위한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별도로 작성하여 판매·제출할 수 있다.

②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 다)가 제65조에 따라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때에는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2배 이내에서 발달장애인인 선거인을 위한 선거 공보를 별도로 작성하여 같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선거관 리위원회는 제65조에 따른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에 이를 함께 발 송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제66조에따라 선거공약서를 작성하여 배부·제출하는 때에는 선거공약서의면수의 2배 이내에서 발달장애인인 선거인을 위한 선거공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같이 배부·제출할 수 있다.

제70조제6항 중 "방영할 수 있다"를 "방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2조제2항 중 "방영할 수 있다"를 "방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9조제12항을 제1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에 관하여는 제7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81조제8항 중 "第71條(候補者 등의 放送演說)第12項의 規定은"을 "제71조제12항 및 제72조제2항은"으로 한다.

제82조의2제12항 중 "하여야 한다"를 "하여야 하며, 한국수어통역의 경우 한국수어통역사를 2명 이상 배치하여 대담·토론을 실시하는 사 람별로 전담하여 한국수어통역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7조제2항 본문 중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를 "고령자·장애인 및 임산부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승강기 및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이 있고 투표하기 편리한 곳에"로 한다.

제149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참관인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회 직원 중에서 1명을 지정하거나, 그 기표소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을 얻어 1명을 선정하여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표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한다.

제151조제8항 중 "視覺障碍로"를 "장애로"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을 제10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인 선거인을 위하여 중 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용지의 내용을 이 해하기 쉽게 나타낸 그림투표용지를 제작·사용하거나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소속정당을 나타내는 마크나 심벌표시 등을 기재하여 사 용할 수 있다.

제157조제6항 중 "자신이 記票할 수 없는 選擧人은 그 家族 또는 本人이 지명한 2人"을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발달장애 등정신적 장애 또는 고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선거인은 그 가족, 본인이 지명한 2인 또는 공적

보조원"으로 한다.

제218조의3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3. 재외투표소 설비,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와 격리자 등의 재외투표소 접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재외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 제261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1. 제70조제6항(제71조제3항 및 제137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2조제2항(제73조제4항·제74조제2항·제79조제12항·제81조제8항 및 제8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지 아니한 자
 - 2. 제147조제3항(제148조제4항 및 제1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	제8조의7(선거방송토론위원회) ①
(생 략)	(현행과 같음)
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2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제2호 후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으로 한	
다. 이 경우 위원정수에 관하여	-,
는 제8조의2제2항 후단을 준용	
한다.	
1. · 1의2. (생 략)	1.・1의2. (현행과 같음)
2. 구・시・군선거방송토론위원	2
회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	
회의 위원장 및 정당추천위원	
을 포함한 위원 3명(정당추천	
위원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에는 그 위원을 모두 포함한	<u>학계·법조계·시</u>
수를 말한다), <u>학계·법조계·</u>	민단체・장애인단체・전문언론
<u>시민단체·전문언론인</u> 중에서	<u>인</u>
해당 구・시・군선거관리위원	
회가 위촉하는 사람을 포함하	
여 9명 이내의 위원. 이 경우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	

원을	겸하는	위원의	임기는
「선기	거관리위원]회법 _」	제8조에
따른	재임기간.	으로 하다	1.

③ ~ ⑩ (생 략)

-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 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 권이 없다.
 - 1. 禁治産宣告를 받은 者
 - 2. ~ 4. (생략)
 - ② · ③ (생 략)
- 第41條(異議申請과 決定) ① 選擧 權者는 누구든지 選擧人名簿에 누락 또는 誤記가 있거나 資格이 없는 選擧人이 올라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閱覽期間내에 口述 또는 書面으로 당해 구・시・군의 장에게 異議를 申請할 수 있다.
 - ② (생 략)
-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생략)
 - ④ 후보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선거공보 외에 시각장애 선거인(선거인으로서 「장애인

- <u>.</u>
③ ~ ⑩ (현행과 같음)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u><삭 제></u>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第41條(異議申請과 決定) ①
<u>구술(口述) 또는 서면을 포</u>
함하여 의사소통이 가능한 방
법으로
② (현행과 같음)
제65조(선거공보) ① ~ ③ (현행
과 같음)
4)

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시각장애인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을 위한 선거공보"라 한다) 1종을 제2항에 따른 책자형 선거공보의 면수의 두 배이내에서 작성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선거·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는 점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음성·점자 등으로 출력되는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⑤ ~ ⑭ (생 략) <신 설>

<u>책자형</u>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내용과 동일하게 작
<u>성할 수 있다</u>
⑤ ~ ⑭ (현행과 같음)
세66조의2(발달장애인을 위한 선
거정보 제공) ①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예비후보자가 제60조의4에 따

라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발간하

여 판매ㆍ제출하는 때에는 발

달장애인(「발달장애인 권리보

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

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선거인을 위한 예비후보자공약집을 별도 로 작성하여 판매·제출할 수 있다.

② 후보자(대통령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그추천정당을 말한다)가 제65조에 따라 선거공보를 작성하여제출하는 때에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별도로 작성하여 산거공보를 별도로 작성하여 같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65조에 따른 선거공보를 발송하는 때에 이를 함께 발송하여야 한다.

③ 대통령선거 및 지방자치단 체의 장선거의 후보자(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정당추천후보자 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 한다)가 제66조에 따라 선거공 약서를 작성하여 배부・제출하

- 第70條(放送廣告) ① ~ ⑤ (생략)
 - ⑥ 候補者는 第1項의 規定에의한 放送廣告에 있어서 聽覺障碍選擧人을 위한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 또는 자막을 방영할 수 있다.
 - ⑦ · ⑧ (생 략)
- 第72條(放送施設主管 候補者演説 의 放送)①(생 략)
 -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候補 者 演說의 放送에 있어서는 聽 覺障碍選擧人을 위하여 한국수 어 또는 자막을 <u>방영할 수 있</u> 다.
- ③ · ④ (생 략) 제79조(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 저 담)① ~ ⑪ (생 략)

<신 설>

	<u>는</u>	때어	는	선거	공	약서	의	면	<u>수</u>
	의	2배	ગા	H에 A	d #	발달	장이	개인	<u>인</u>
	<u>선기</u>	귀인을	<u>)</u>	위한	کر ن	선거	공약	<u></u> 부서	를
	<u>별</u> 5	三로	작식	성하여	भे 🤃	같이	 	H부	•
	제출	출할	수 :	있다.	<u>.</u>				
色	70億	系(放	送廣	告)	1	~	(5)	(현	행
	과	같음)						
	6								
				- 방 승	하	여이	: 힌	<u>다</u> .	
	7	• (8	3) (3	현행:	라 경	같음	.)		
色	72億	系(放	送施	設主	管	候	補者	香演	說
	의	放送) (1) (현	행고	가 같	같음)	
	2								
				⁻	방영	하이	혀이	:	한
	<u>다</u> .								
	3	• (2	(d	현행:	라 경	같음	.)		
1	793	존(공	개장	소에	서	의	연실	늴 •	대
	담)	1	~ ((d	현행	과	같음	<u>)</u>	
	12	공개	장소	_에스	러의	연	설.	대	담
	에	과하	성 느	- 제	792	< 제 ') 하-	0	즈

용한다.

① (생략)

- 談·討論會) ① ~ ⑦ (생 략)
 - 說)第12項의 規定은 候補者 등 초청 對談·討論會에 이를 準 用한다.
 - ⑨ (생략)
-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 ① (생 략)
 - ②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 · 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 는 청각장애선거인을 위하여 자막방송 또는 한국수어통역을 하여야 한다.

- ① · ① (생 략)
- 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① (생 第147條(投票所의 設置) ① (현행 략)
 - ② 투표소는 투표구안의 학교,

(13)	(현행	제12항과	같음)

第81條(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 第81條(團體의 候補者등 초청 對 談·討論會) ① ~ ⑦ (현행과 같음)

- ⑧ 第71條(候補者 등의 放送演 | ⑧ 제71조제12항 및 제72조제2
 - ⑨ (현행과 같음)

제82조의2(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① ~ ① (현행과 같음)

(12)	

하여야 하며, 한국수어통역의 경우 한국수어통역사를 2명 이 상 배치하여 대담 · 토론을 실 시하는 사람별로 전담하여 한 국수어통역이 이루어지도록 하 여야 한다.

① · ④ (현행과 같음)

- 과 같음)
 - (2) -----

읍·면·동사무소 등 관공서, 공공기관·단체의 사무소, 주민 회관 기타 선거인이 <u>투표하기</u> 편리한 곳에 설치한다. 다만, 당해 투표구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적당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투표구안에 설치할 수 있다.

- ③ ~ ① (생 략) 제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제 ① ~ ⑤ (생 략)
 - ⑥ 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 연락소장은 선거권자 중에서 1 명을 선정하여 기관·시설의 장이 설치·운영하는 기표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할 수 있 다. <u><단서 신설></u>

<u>고령자·장</u>
애인 및 임산부 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승강기 및 경사로
등의 편의시설이 있고 투표하
<u>기 편리한 곳에</u>
③ ~ ⑪ (현행과 같음)
149조(기관・시설 안의 기표소)
① ~ ⑤ (현행과 같음)
6
만, 본문에 따른 참관인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구・시・군선거
관리위원회는 위원회 직원 중
에서 1명을 지정하거나, 그 기
표소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선거권자 중에서 본인의 승낙
을 얻어 1명을 선정하여 기표

⑦ 기관·시설의 장은 기표소를 설치하는 장소에 기표소· 참관좌석,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설비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⑧ (생략)

-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작 저성) ① ~ ⑦ (생 략)
 - ⑧ 區・市・郡選擧管理委員會 는 視覺障碍로 인하여 자신이 記票를 할 수 없는 選擧人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中央 選擧管理委員會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 特殊投票用紙 또는 投票補助用具를 제작・사용할 수 있다.

<신 설>

소의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히	-
<u> 여야 한다.</u>	
7	-
	-
	-
	-
소는 그 안을 다른 사람이 엿	<u> </u>
볼 수 없도록 설비하여야 한다	<u>.</u>
⑧ (현행과 같음)	
제151조(투표용지와 투표함의 직	_
성) ① ~ ⑦ (현행과 같음)	
8	-
<u>장애로</u>	-
	-
	-
	-
	-

⑨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발달장애인인 선거인을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용지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나타낸 그림투표용지를 제작·사용하거나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⑨ (생 략)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 7 차) ① ~ ⑤ (생 략)

⑥ 選擧人은 投票所의 秩序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초등학생인 어린이의 경우에는 기표소를 제외한다)안에 출입할 수 있으며, 視覺 또는 身體의 障碍로 인하여자신이 記票할 수 없는 選擧人은 그 家族 또는 本人이 지명한 2人을 동반하여 投票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⑦ · ⑧ (생 략)
 제218조의3(재외선거관리위원회 저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①
 (생 략)

소속정당을 나타내는 마크나
심벌표시 등을 기재하여 사용
<u>할 수 있다.</u>
⑩ (현행 제9항과 같음)
제157조(투표용지수령 및 기표절
차) ① ~ ⑤ (현행과 같음)
6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나 발
 달장애 등 정신적 장애 또는
고령으로 인하여 혼자 기표소
에 들어가서 기표하는 것이 현
본인이 지명한 2인 또는 공적
 보조원

⑦ · ⑧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3(재외선거관리위원회
와 재외투표관리관의 직무) ①
(혀해과 간은)

- ② 재외투표관리관은 다음 각 ②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 1. 2. (생략)
- 3. 재외투표소 설비

4. • 5. (생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 ① ~ ③ (생 략)
- ④ 제147조제3항(제148조제4항 및 제173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
- -----
- 1. 2. (현행과 같음)
- 3. 재외투표소 설비, 고령자·
 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와 격리자등의 재외투표소 접
 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제
 반 시설의 설치, 적절한 재외
 투표소 위치 확보 등의 조치

4. • 5.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 · 징수 등)

-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 1. 제70조제6항(제71조제3항 및 제137조의2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72조제2항(제73조제4항·제74조제2항·제79조제12항·제81조제8항 및 제82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한국수어 또는 자막을 방영하지 아니한 자
 - 2. 제147조제3항(제148조제4항

	및 제173조제3항에서 준용하
	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
	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⑤ ~ ⑫ (생 략)	⑤ ~ ⑫ (현행과 같음)